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안영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19
----------	------

발의연월일 : 2021. 3. 22.

발 의 자 : 안영호, 김지근, 노세영,
문희성, 강혜경, 박경흠,
김기환, 권태호, 박채연,
이명녀(10명)

1. 제정이유

「소음·진동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건강한 삶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사장 소음측장기의 설치 권고 등 생활소음·진동의 측정방법(안 제6조~제7조)
- 나. 공사장 비산먼지 억제, 도로먼지 억제(안 제8조~제9조)
- 다. 지도·점검,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개선명령 등(안 제10조~11조)
- 라. 사업자의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관리 자율참여(안 제12조)
- 마. 구민감시 및 협의회 구성(안 제13조~제14조)

3. 근거법규 : 따로 붙임

- 가. 「소음·진동관리법」
- 나. 「대기환경보전법」

4. 제정조례안 : 따로붙임

5. 참고사항

- 가. 조례안 예고 : 2021. 4. 1. ~ 2021. 4. 8.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진동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구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소음·진동”이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소음·진동을 말한다.
2. “비산먼지”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3. “특정공사장”이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특정공사로서 사전신고대상인 공사장을 말한다.
4. “특별관리공사장”이란 건축물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해체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 규모의 10배 이상 공사장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억제시설 설치와 적정 운영여부의 지도 점검에 대한 사항
2.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 등의 방지활동에 관한 사항

제4조(사업자의 책무) 생활소음·진동 또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을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사업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보호시책에 참여 및 협력
2. 사업공정에 따른 모든 처리과정에서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의 저감에 관한 모든 규정 준수 및 이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개선
3. 구민의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피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민과 협의 등 적극적인 민원 해소대책 마련
4. 구민의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로부터 쾌적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보호 및 홍보사업 등에 협조
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의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조치

제5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저감 실천으로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정착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구가 시행하는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등) ① 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모든 규정을 준수 하도록 하고, 생활소음 저감을 위하여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따른 소음측정기기 설치권고 대상은 2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장으로 한다.

1. 주택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장
2. 주택 재건축사업 공사장
3. 그 밖에 특정공사장 중 구청장이 소음측정기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장

③ 구청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권고 대상 공사장에 대하여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의 2개소 이상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상시 측정방법 등을 명시한 소음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구민이 운영계획서를 공개 요구할 때는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생활소음·진동의 측정방법) ① 생활소음·진동의 측정은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에서의 생활소음·진동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해서는 생활소음·진동 피해의 사전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공사장 부지경계선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을 측정할 수 있다.

제8조(공사장 비산먼지 억제) ① 구청장은 특별관리공사장 사업자에 대하여 제2항과 제3항의 비산먼지 저감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공사장 내 차량통행 도로를 우선 포장하고, 건축물 축조 공사장은 건물바닥을 수시로 청소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 공사장으로부터 도로에 토사유출과 출입차량의 세륜, 세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사장 출입구에 비산먼지 관리 전담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9조(도로먼지 억제) ① 도로굴착공사를 하는 사업자는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해 신속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 중에는 진공노면청소차나 고압살수차 등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②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미만 공사장의 사업자는 공사장 주위를 수시로 물청소하고 토사류가 흩날리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도로굴착 공사를 하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사업을 가급적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점검) 구청장은 구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제13조(구민감시) ① 구민은 누구나 소음발생 행위에 대한 자율감시 및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신고한 소음발생 행위에 대하여 즉시 조치하고 조치결과를 해당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협의회 구성) ① 구청장은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사업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제4조 제3호에 따른 사항을 사업자와 협의하기 위해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대책 협의회(이하"협의회"라고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근 거 법 규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 ①법 제21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다만, 산업단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4.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장·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주택(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는 제외한다), 운동·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

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확성기에 의한 소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과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3. 제1항 각 호의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4. 공장·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③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①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④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은 제외한다)을 하려는 자(영 제44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을 도급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를 사업시행 전(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 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서를 변경 전(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같은 항 제5호의 경우에는 제8항에 따라 발급받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설치기간 또는 공사기간의 종료일까지)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대상 사업이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착공신고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그 공사의 착공 전에 별지 제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서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 비산먼지 배출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공사의 규모를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가. 별표 13 제1호가목 중 시멘트제조업(석회석의 채광·채취 공정이 포함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별표 13 제5호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사업의 규모가 신고대상 사업 최소 규모의 10배 이상인 공사

3의2. 제3호 각 목 외의 사업으로서 사업의 규모를 10퍼센트 이상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4.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또는 조치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5.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건설공사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 공사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걸쳐 있는 건설공사이면 그 공사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른 공사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내용을 알려야 한다.

④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자로서 별표 14의 기준을 준수하여도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상당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자에게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5의 기준을 전부 또는 일부 적용할 수 있다.

1. 시멘트 제조업자
2.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자
3. 석탄제품 제조업자
4. 건축물 축조공사자
5. 토목공사자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 사업자가 설치기술이나 공법 또는 다른 법

령의 시설 설치 제한규정 등으로 인하여 제4항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그 기준에 맞는 다른 시설의 설치 및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서에 제4항의 기준에 맞는 다른 시설의 설치 및 조치의 내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